

# 윤리규정 실천지침

## 윤리규정 적용항목

업무수행 시 비 윤리적 행위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형

- (1)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: 금품수수, 향응 및 접대, 차용, 부채 상환·보증, 금전 대차 및 미래보장 등
- (2)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: 상장·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, 공동 투자, 공동 자산 취득 등
- (3)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: 불공정한 기회 부여, 불공정 거래 행위,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
- (4) 회사 자산의 불법·부당 사용 : 유·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, 공금 횡령 및 유용 등
- (5)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: 문서, 계수의 조작 및 변조, 허위 보고 행위 등
- (6) 기타 : 직무태만, 관리감독 소홀, 월권행위, 품위손상 등

## ★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: 금품수수, 향응 및 접대, 차용, 부채 상환·보증, 금전 대차 및 미래보장 등

구 분	예 시	행동원칙	비 고
금전수수	현금,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	수수금지	
행동지침	이해관계자의 금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, 정중하게 거절 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. 반환을 입증할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송금하며, 송금표 사본 및 처리결과를 소속부서장 및 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한다 ※금품.편의수수 신고서 작성		
선물수수	골프, 헬스 클럽 이용권, 상품권, 관람권 물품 등 기타 판촉 및 할인 혜택	전면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수수금지</li><li>• 불가피한 경우 사후 반환</li></ul>
행동지침	이해관계자의 선물은 정중하게 거절 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. 단,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 ① 수령 후 선물은 소속부서장 및 경영관리본부장에게 보고후 반송. 단 해외거래선의 선물인 경우는 회사 경영진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. ※금품.편의수수 신고서 작성		
경조금	경조금 및 물품 (화환, 돌반지 등)	한도 초과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경조금 : 축의금, 부의금에 한함 (사회 통념 상 200,000원 이내)</li><li>• 거래처에 경조내역 고지 가능</li></ul>
행동지침	사회통념상 일반적 범위내 경조금은 신고의무 면제 (200,000원 이하) ① 경조금 : 임직원 본인의 결혼 축의금, 직계 가족의 조의금 ② 경조물품 : 통상적인 화환, 조화, 돌반지(1돈) ③ 승진 및 영전 등 화환, 난초 등		
비용부담	접대비, 회식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(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)	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</li></ul>
향응 및 접대	룸 살롱, 단란주점, 나이트 클럽, 안마시술소, 고급 이발소, 고급 사우나, 기타 호화/사치 유흥 업소 고스톱, 카지노, 경마, 경륜, 경정 등 도박성 오락	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골프, 스키, 공연 등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공식적인 모임은 가능</li><li>• 사치유흥업소 및 도박성 오락출입은 금지</li></ul>
행동지침	①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, 금액이 합리적이며 법적 또는 관행 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- 1인당 50,000원 이내의 식사 허용 ②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및 경영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. ※ 향응.접대 신고서 작성		

구 분	예 시	행동원칙	비 고
편의제공	① 출장시 교통편의 (철도/항공/버스 승차권, 차량지원 등) 숙식편의 (숙박, 식사 지원 등) ② 개인휴가시 교통 및 숙박제공 ③ 부서 내 행사의 협찬 (금전, 물품, 교통 편의 등) ※ 100,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가능	정당한 금액 지불 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당한 대가 지불</li> <li>교육이나 세미나 참석시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편의시설이용은 가능</li> <li>부서이전시 사무용 비품 (시계, 거울) 지원은 가능</li> <li> 이해관계자 주최 행사참여시 소속부서장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함</li> </ul>
차용 (동산 및 부동산) 부채 상환, 보증, 금전 대차	① 동산/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임차, 담보설정, 무상수수, 염가매입 등 ②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③ 신용카드 대금, 외상 대금, 대출금 등 개인 부채의결제 또는 대리 상환 ④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, 보증 제의	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전 대차 행위 및 그에 따른           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은 이유를            불문하고 금전 수수로 간주</li> </ul>
미래에 대한 보장, 고용 알선, 계약 체결 약속	① 고용알선 :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 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② 계약체결약속 :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	금지	

### ★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

구 분	예 시	행동원칙	비 고
협력사/관계사 주식취득	① 등록된 협력회사의 주식 및 비등록업체라도 당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주식 포함 ② 회사에서 투자한 업체의 주식 및 향후 회사 와 업무관련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	보유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가 투자한 회사와 관계가 없고            순수투자목적의 KOSPI / KOSDAQ            상장사 주식은 제외</li> </ul>
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	① 자금의 공동 투자를 통한 동산/부동산의 취 득, 콘도·골프·헬스클럽 등의 회원권 투자 ② 협력사 겸직 : 이해관계자 회사에 이사 등재 직원 겸직 및 실질적 업무 수행 행위	금지	

### ★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: 불공정한 기회 부여, 불공정 거래 행위,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

구 분	예 시	행동원칙	비 고
불공정 기회부여	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 거절, 기회 박탈 ② 배타적인 거래 조건 설정, 근거 없이 거래지 역 상대방 한정 ③ 가격차별, 거래조건의 차별 적용, 담합을 통 한 집단 차별 ④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(높은 단가, 거래 조건 등)	규정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            하는 행위 금지</li> <li>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          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           사유 확보</li> </ul>
불공정 거래	① 일방적 납품물량조절, 부당 염가매입, 계약 조건 일방적 변경, 대금결제 고의지연 부당 한 사유로 일방적인 거래 단절 ② 부당한 기술이용, 협력회사 인력의 부당채 용, 경쟁업체와의 거래 방해, 기타 사업활동 방해	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            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            당한 사유 확보</li> </ul>
정보유출	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	금지	

## ★ 회사 자산의 불법·부당 사용

구 분	예 시	행동원칙	비 고
유형자산 횡령 / 유용	① 고정자산 : 토지, 건물, 설비기기등을 사업 목적외 전용, 무단 사용,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 ② 업무용 자산 : 차량, PC, 고가의 소모품 등의 무단반출, 무단 사용, 유지비 전가 등 ③ 법인카드 : 한도를 초과한 과다 사용, 비용계정의 전용, 개인 용도 사용	금지	
무형자산 유용	제품 설계도의 유출, 영업 기밀/사업정보의 유출, 정보의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업체 제공	금지	
공금횡령 및 유용	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, 사적인 응통,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 한 개인 착복,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 (카드 깡 등)</li> <li>• 허위 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 (개인사용영수증 등)</li> <li>• 무 증빙 비용 제도의 악용 (출장비 전용)</li> <li>• 개인유흥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를 타 계정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</li> <li>• 법인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</li> <li>• 기타 회사 경비 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</li> </ul>	금지	

## ★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

### 1. 기본원칙

- (1)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(2) 임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, 계수의 조작·변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.
- (3) 특히,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자료는 세법, 기업회계기준 및 회사표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 
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.

구 분	행 동 지 침
문서·계수의 조작, 변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,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</li> <li>- 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,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한다.</li> </ul>
허위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내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, 사외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.</li> <li>- 고객에게 상품 판매,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</li> <li>- 직접적인 허위보고 이외에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한 정보조작도 포함</li> </ul>

★ 기타 윤리규범 위반 (직무태만, 관리감독 소홀, 월권행위, 품위손상 등)

구 분	행 동 지 침
직무태만	<p>직위/직책상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</li> <li>-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.</li> <li>-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·동료·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.</li> </ul>
관리감독소홀	<p>업무 수행을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직원은 직위/직책상 주어진 직무의 수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.</li> <li>-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li> <li>- 특히, 부서 책임자의 경우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li> </ul>
구 분	행 동 지 침
월권행위	<p>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/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사는 부하 임직원에게 회사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.</li> <li>-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.</li> <li>-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서 내 행사에 대한 암시 및 찬조, 임직원간 금전차용 및 거래행위</li> <li>② 현장 방문 등에 대한 불필요한 통보로 차량지원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</li> <li>③ 부서가 직접 진행해야 할 서류나 Data의 정리 등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대행 요구</li> <li>④ 개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의 규정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준수를 요구</li> <li>⑤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비인격적인 발언</li> <li>⑥ 기타 관례를 이유로 부서의 자체 업무/경비 사용 등을 협력회사에 전가하는 행위</li> </ul> </li> </ul>
품위손상	<p>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도덕성,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,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는 안된다.</li> <li>- 법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,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.</li> </ul>
<p>(1)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규 및 회사 징계규정에 의해 처벌된다.</p> <p>(2)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은폐 목적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.</p> <p>(3) 자신이 직접 윤리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.</p>	

★ 윤리규정 위반대상의 사후조치

- |   |
|---|
| (1) 부정·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, 회사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.                |
| (2) 회사로부터 부정·비리와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. |
| 단, 불가피하게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       |